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88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박균택 · 김문수 · 이성운  
박상혁 · 민형배 · 김주영  
주철현 · 한민수 · 권철승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1헌바168등, 2026년 2월 26일 선고).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나. 집회의 발생 경위, 장소,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벌칙) ① (생 략)</p> <p>② <u>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p> <p>-----</p> <p>-----</p> <p>-----</p> <p>-----</p> <p>-----</p> <p>1. <u>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u></p> <p>2. <u>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집회의 발생 경위, 장소,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u></p>

<p><u>&lt;신 설&gt;</u></p> <p>③ · ④ (생 략)</p>	<p><u>하는 경우</u></p> <p>3.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u>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